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844 2021. 10. 22.(금)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13일

-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연준 환경산림국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환경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 및 제3조)
- O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, 직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)
- O 건강영향조사, 역학조사, 청원의 처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- O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○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가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,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하며,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처리를 하도록 「환경보건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 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O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2조 및 제3조는 「환경보건법」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「환경보건법」 제10조의2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의 환경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, 위원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「환경보건법」제15조에 따른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, 「환경보건법」 제17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행 또는 우려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 및 「환경보건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4조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5조는「환경보건법」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O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O 입법예고('21.9.3. ~ '21.9.23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환경보건법」개정에 따라 시·도에 위임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, 지역환경보건위원회

구성,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할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

의 안 번 호 844 발의연월일 : 2021년 10월 1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O 「환경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O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 도민의 건 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2조, 제3조)
- O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4조~제10조)
- O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(안 제11조~제14조)
-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15조)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- 6. 비용추계서 : 붙 임

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보건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충 청북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.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「환경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의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충청북도민(이하 "도민"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(이하 "환경보건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도민 및 시장· 군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,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③ 도지사는 국가의 주요 환경보건 정책의 변경, 시장.군수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서 수립한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보건계획을 변경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3조(환경보건계획의 시행)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- 제4조(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)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의 환경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업무 담당과장,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 담당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 - 1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인
 - 2. 환경보건 전문가
 - 3.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- 4.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
 - 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6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7조(위원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 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장이 심의.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.
 - ⑤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의한다.
- 제9조(적용)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10조(존속기한)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, 존속기한을 넘어서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 5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1조(건강영향조사 등)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업단지, 폐광지역,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2조(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) ① 도민은 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

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,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13조(조사결과에 따른 조치) ① 도지사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, 해당 시 장.군수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.
- 제14조(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)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(이하 "건강영향조사반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.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- 제15조(행정적.재정적 지원)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기관.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.연구.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

- 2.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.연구 및 교육
- 3.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환경보건법

제6조의2(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(지역환경 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

- 제10조의2(지역환경보건위원회)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(이하 "지역 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
 - 2.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
 - 3.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
 - 4.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·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 -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 - 1. 환경보건 전문가
 - 2.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
 - 3.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
 - 4. 소속 공무원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5조(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)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·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7조(건강영향조사의 청원)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.

1. 환경부장관

- 가. 2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
- 나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
- 다.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·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
- 라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마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2. 시·도지사: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(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있다.
-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.
- 1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「청원법」에 따른다.
- 제17조의2(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

-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·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0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6조(환경보건센터의 지정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·감시·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기 술개발,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·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, 대학교, 국공립병원과 민 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 (이하 "환경보건센터"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O 상위법령인 「환경보건법」 개정으로 환경보건계획 수립 필요
- O 환경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

2. 비용 발생 요인

- O 충청북도화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
- O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참석, 안건검토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(안 제2조제1항)
- O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(안 제4조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O 환경보건계획 수립 연구용역 : 법정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반영
- O 위원회 수당 :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」에 따름

나. 추계 결과

- 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 1식 = 100,000천원
-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구성·운영 = 연5,000천원

- 출석수당 : 16명×연2회×100천원 = 3,200천원

- 원거리수당 : 5명×연2회× 30천원 = 300천원

2명×연2회× 50천원 = 200천원 - 안건심사수당 : 16명×연1회× 30천원 = 480천원

: 10명 × 연1외 × 50전원 - 460전원 16명 × 연1회 × 50천원 = 800천원

※ 최초연도는 연1회 개최로 2,500천원

다. 재원 조달방안

○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 : 도비 100%

○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구성·운영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장 이일우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<i>λ</i>	출	102,500	5,000	5,000	5,000	5,000	122,500
환경보건계획 수립 연구용역 위원회 수당 (정책기획관 Pool)		100,000	1	1	1	-	100,000
		2,500	5,000	5,000	5,000	5,000	22,500
재원 조달		102,500	5,000	5,000	5,000	5,000	122,500
자체 수입	도비 일반회계	102,500	5,000	5,000	5,000	5,000	122,500